

자산보관 · 관리보고서

신탁업자 : 신한은행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형)
- 종류형 펀드 :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형) 클래스 A, C, C2, C3, C4, C-E, A-EU
- 나. 분류 : 특별자산간접투자기구
- 다. 보관 · 관리기간 : 2010.05.27 ~ 2011.05.26
- 라. 집합투자업자 : KB자산운용(주)
- 마. 투자매매업자 · 투자중개업자 : SK증권, 국민은행, 삼성증권, 유진투자증권, 이트레이드증권, 케이비투자증권, 하이투자증권, 한국외환은행, 현대증권, 홍콩상하이은행(HSBC)

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

-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(금-파생형)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0-07-26	제51조의2(투자신탁의 전환)	(신설)	① 8. KB스타 레버리지1.7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(주식-파생형)
2010-12-06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	(신설)	4. C2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C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보유자 5. C3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C2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보유자 6. C4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C3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보유자 7. C5클래스 집합투자증권: C4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보유자
2010-12-06	제39조(보수)	(신설)	3. C2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1,000분의 12.94 4. C3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1,000분의 12.29 5. C4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1,000분의 11.65 6. C5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1,000분의 11
2010-12-06	제45조(투자신탁의 해지)	(신설) ①3.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	①3.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.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
2011-04-08	제18조(투자대상 취득한도)	6.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% 이하로 한다.	6.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% 이하로 한다.
2011-04-08	제17조(투자대상 자산 등)	7.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도	7.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도
2011-04-28	제18조(투자대상 취득한도)	6.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% 이하로 한다.	6.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% 이하로 한다.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 해당사항없음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 · 교체 · 해임에 관한 사항

(단위 : 원)

변경전				변경일	변경후			
회계감사인명	계약기간	감사보수	계약방법		회계감사인명	계약기간	감사보수	계약방법
대주회계법인	2010.07.10	600,000	수의계약	2010-07-11	대주회계법인	2011.07.10	1,200,000	수의계약

7.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확인

- (1)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 - 부합함
- (2)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- 적정함
- (3)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- 해당사항없음
- (4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
 - 공정함
- (5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의 여부
 - 적정함
- (6)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 감독이사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 - 해당사항없음
- (7)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생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
 - 해당사항없음
- (8)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 - KB자산운용(주)의 준법감사인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투자신탁별 자산배분내역의 적정성과 이행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산운용회사 홈페이지(<http://www.kbam.co.kr>) 및 고객센터서 가입하신 상기 판매회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.